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1.11.8.(월)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e-mail)
------	---------------	------	--

상 담 요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교수	연락처

상담 내용

(a) 저희 가족이 책을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제가 추천사를 써도 문제 없을까요?

(b) 제가 직접 책을 출판하는 경우(연구니, 직무와 상관없는 교육용 도서)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c) 자녀가 타대학 학부과정에 있습니다. 저와 전공이 같은 ○○과 입니다. 방학때 저희과의 어느 랩에서 "학부생 인턴"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상담 결과

(a) 교수님께서 가족이 출판하시는 책에 소속기관과 직위(교수)를 기재하여 추천사를 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는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포·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출판 서적에 자신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명기한 추천사를 적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책을 출판하는 경우 타업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예상되므로 교원 겸직 허가 지침에 따라 타업행위 사전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과대학→교무팀) 더불어, 재산상 이익 취득형태, 활동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교무팀)와 사전 협의 후 관련 사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자녀분이 저희 유니스트의 다른 교수님 랩에서 인턴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사전에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 교수님이 자녀분을 다른 교수님께 소개하거나, 다른 교수님께 자녀분의 인턴십을 부탁하셔서는 안됩니다. 즉 교수님께서 자녀분의 인턴십 과정에 일절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분이 교수님의 개입

없이 인턴십을 하시고자 하는 교수님께 연락을 직접 하시고 그 교수님이 다른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분의 인턴십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3) 자녀분이 인턴십을 하시는 랩의 지도교수님 또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인턴십에 관한 사항을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서 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감사실장의 일상감사 결재, 총무팀 협조 결재를 거쳐야 하고 학과장 또는 학장의 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행동강령책임관

모승복

모승복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